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12월 12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1일(금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과장 이승렬(044-203-5660), 김정윤 사무관(5666)
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과장 유주석(02-2100-7684), 이정은 사무관(7698)

12.13(일), 한-유럽연합(EU) 자유무역협정(FTA)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

- 문화협력 및 지재권 보호 관련 양측간 협력 확대 -

□ 2011. 7. 1.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* 상태이던 한-유럽연합(이하 EU) 자유무역협정(이하 FTA)가 12. 13.(일) 전체 발효한다.

* 한-EU FTA 협정 제15.10조(잠정 적용)에 따라,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완료와 EU 각료이사회 승인으로 '11.7.1일 이래 잠정적용 상태

○ 이는 올해 한-EU 정상회담(9.15일, 서울)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라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하기로 한 양측 정상간 합의 후속조치 사항이다.

* 한-EU 양측은 10.15(목)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 교환을 완료
 - 한-EU FTA 협정 제15.10조 제2항에 따라 서면통보문 교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2.13(일)에 전체 발효

□ 한-EU FTA가 전체 발효하면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*되었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마저 발효하게 된다.

* 한-EU FTA는 제15.10.5조에 따라 협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잠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'10.9월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부 조항은 미발효

< 한-EU FTA 전체발효에 따른 추가 적용 규정 >

◇ (문화협력의정서) 예술가·문화전문가·실연자 간 협력, 시청각공동제작협정 관련 협력, 방송·공연예술·출판·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

◇ (지재권 형사집행) 상표권·저작권·저작인접권 침해,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의 유형(자산 압수, 징역형, 벌금형 등) 규정

□ EU측은 FTA 등 통상협정 체결시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협정의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잠정적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.

○ 한-EU FTA의 경우,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리 진행*되어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(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)은 2011. 7. 1.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했다.

* 한-EU FTA 서명국(27개) 비준동향 : '11년(체코, 헝가리 등 9개국), '12년(영국, 스페인 등 9개국), '13년(독일 등 3개국), '14년(프랑스, 벨기에 등 5개국), '15년(이태리)

** 현재 EU는 '13.7월 가입한 크로아티아를 포함하면 총 28개 회원국임

<첨부> 1. 한-EU FTA 전체발효시 추가 적용되는 조항
2. 한-EU FTA 발효 관련 양측 국내절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이승렬 과장(☎044-203-5660), 김정윤 사무관(☎044-203-56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 한-EU FTA 전체 발효시 추가 적용되는 조항

□ (배경) 한-EU FTA는 협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잠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'10.9월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부 조항은 미발효

※ (한-EU FTA 제15.10조 제5항 제나호) **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**, 그러한 잠정 적용을 할 수 없는 당사자는 **다른 쪽 당사자에게 잠정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을 통보**

○ '15.12.13일 부로 잠정발효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에 대한 확대 적용

□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조항 : 한-EU FTA 협정문 제10.54조~제10.61조

○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,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,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의 경우 형사책임 도입 및 처벌 등 부여

○ 지재권 침해시 형사절차 및 처벌의 유형 규정

- 위조 등 지재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자산의 압수, 징역형 또는 벌금형, 제3자의 권리보호 등

□ 문화협력 관련 조항 : 한-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제4조제3항, 제5조제2항, 제6조제1항~제2항, 제6조제4항~제5항, 제8조, 제9조, 제10조

○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간 협력

○ 한국과 EU 회원국간 새로운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관련 협력

○ 축제, 세미나 등을 통한 시청각 활동 증진, 방송 분야 협력 증진, 기술 장치 및 설비 대여·임차 증진, 시청각 자료의 디지털화 증진

○ 공연예술, 출판, 문화재 및 역사적 유산에 대한 보호를 위한 협력 증진 등

MIN TRA

첨부 2 한-EU FTA 발효 양측 국내절차

